

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청회등 개최)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등)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,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
개정조례(안) 심사 보고서

1994. 4. 12.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 결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2. 25.

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 일자 : 1994. 2. 26.

다. 상정 일자 : 제22회 임시회 제1차
위원회(94. 4. 12)상정, 의결.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토지관리계장 박재현)

가. 제출 이유

-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

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.

나. 주요골자

-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포함하여 11인이내에서 20이내로 함.(안, 제2조 제1항)
- 위원장은 필요한경우에는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.
(안, 제6조 제2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전재)

○ 동 개정 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확보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전문가 및 주민대표등을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,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는 것임.

○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병행하여 공시지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조정 및 인력의 전문화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질문(김유현 위원) : 동 위원회의 인원을 늘릴 이유는 무엇인가?
- 답변(박재현 토지관리계장) : 예전에는 소위원회가 없었으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.

- 질문(김유현 위원) : 금융기관 임직원을 등 위원회에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그들이 전문지식이 있는가?
- 답변(박재현 토지관리계장) : 은행에서 자금 대출시 담보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질문(윤동현 위원) : 안 제8조에 보면 관계공무원, 동지가심의회위원등을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하게되어 있는데 동지가심의회가 무엇인가?
- 답변(지영창 재무국장) : 동사무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. 동장을 위원장으로 15인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에서 1차 심의후 구청에 올립니다. 구위원회에서 심의때 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.
- 질문(윤동현 위원) :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건수가 작년에는 얼마나 되는가?
- 답변(박재현 토지관리계장) : 작년에 이의신청건수는 540건이며 이중 약 30%가 시정되었습니다.

5. 토론판단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
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7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2. 25.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

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.

2. 주요 골자

- 가.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포함하여 11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함.(안 제2조 제1항)
- 나.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.(안 제6조의 2)

3. 개정 근거

-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(1991. 12. 31. 대통령령 제13563호) 제14조
- 지적 58323-30 ('94. 1. 8)호 : 준칙(안)

4. 개정조례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예산 수반 여부 : 위원회 위원 수당 예산조치 필요함.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증
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증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중 “11인”을 “20인”으로 하고,
동조제3항 제1호중 “5인”을 “9인”으로, 동
항 제2호중 “6인”을 “10인”으로 각각 한다.

제3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금융기관의 임직원

5. 공인중개사

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 2(소위원회)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, 동지가 심의회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<u>11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(생략)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관계공무원 중 <u>5인</u> 이내 2. 제3조에서 정한 자 중 <u>6인</u> 이내	제2조(구성) ①..... <u>20인</u> 이내..... ② (현행과 같음) ③
제3조(위원위촉)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지역에 정통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<u>농협</u>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5. <u>부동산 중개업자</u> 6. (생략) 7. (생략) <u>(신설)</u>	제3조(위원위촉)
	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금융기관의 임직원</u> 5. <u>공인중개사</u> 6. (현행과 같음) 7. (현행과 같음)
	제6조의2(소위원회)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8조(의견청취)</u>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.</p>	<p><u>제8조(의견청취)</u>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, 동지가しく 회 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
<p><u>제12조(운영규칙)</u>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<u>제12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
조례(안) 심사 보고서

1994. 4. 12.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 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3. 24.
마포구청장 제출
 - 나. 회부 일자 : 1994. 4. 1.
 - 다. 상정 일자 :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94. 4. 12.)상정, 의결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김영찬)
 - 가. 제안이유
 - 국·공유재산의 무단점유사실을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다른 업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.
 - 나. 주요골자
 - 국·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게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 추가(안, 제3조, 제4조)
 - 세입징수포상금 관련 서식을 별표로

신설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진재)

- 동 조례안은 국공유 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, 과년도 미수액 체납을 징수한 경우와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 징수한 경우등에 지급하는 포상대상자들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임.
-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거나 대부를 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사용 수익을 하도록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
 - 질문(김유현 위원) :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발견하여 변상금만 부과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가?
 - 답변(김영찬 재무과장) : 아닙니다. 부과하여 징수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